

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9조 제2항 중 “내무국장” 을 “문화관광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